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22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
2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3. 상정일자 : 제315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22년 12월 19일 상정· 의결(수정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상한 복지정책실장)

1. 제안이유

- 본 개정조례(안)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*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의 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* 법률(개정 '21.12.21., 시행 '22.6.22.), 시행령(개정 '22.6.14., 시행 '22.6.22.)

2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(기존 제5조)

나.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 제5조의3 신설)

1)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 심의할 수 있도록 함
-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 구성 기준 마련

2) 처우개선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1)

- 위원의 임기,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3)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해임·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
-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해임·해촉 사유 규정

4)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3)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, 회의 소집 사유 등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2. 7. 14. ~ 8. 3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기존 조례의 “사회복지사 등 정책 자문위원회”를 대신해 “처우개선위원회”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가. 개정안의 제안배경

-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, 열악한 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.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 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.¹⁾
-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²⁾의 처우보장 및 지위향상은 2011년 제정되고, 2012년 시행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

1) 조상미, 정희수, & 한예선.(2020).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조건: 무엇이 변화되고 그 경험은 어떠한가?. *한국사회복지학*, 72(3), 85-107.

2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2조(정의) 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 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있으며, 같은 법 제 3조에서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’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³⁾

- 이와 관련해 ‘21년 12월 동 법률 개정안⁴⁾이 통과되었으며,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에서도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추진 현황

-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 지방이양시점 이후부터 매년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, 2014년부터는 단계적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의 95%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왔음.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예산현황에 따라서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음.⁵⁾

3) 김수정·김광병(2021).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분석. 사회복지법제연구 12(2).

4) 2021년 12월 개정, 2022년 .6월 시행

5) 현명이 외(2016)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방안 연구. 서울시복지재단.

- 또한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 효율성 중심의 수혜자 양적 확대에 집중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문제는 간과된 측면이 있음.⁶⁾
-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4년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고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.
- 대표적 성과로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금 수준 대비 95%까지 끌어올렸으며, 전 사회복지시설 시 단일임금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주요 추진경과

연도	주요추진경과
2013년	·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용역 실시
2014년	·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을 통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
2016~2017년	·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 적용
2017년	· 근무여건 개선제도 시행 -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, 장기근속휴가, 대체인력지원, 단체인수비 지원 제도 도입
2019년	· 유급병가제도 도입
2020년	· 자녀돌봄 휴가제도 도입 · 국비시설 대상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 방안마련
2021년	· 건강검진 휴가제도 도입 · 국비시설, 서울시비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완성

출처: 서울시 “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”

6) 이철선 외(2018).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. 한국보건사회연구원.

다. 향후 과제 및 개정안의 필요성

-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을 설정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2022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여전히 낮은 보수수준, 높은 업무강도,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그 외 연구결과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의 근로시간과 관련한 구조적인 과제, 임금 보수체계에 대한 합리적 검토,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음.
-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“사회복지사 등 정책자문위원회”를 통해 보수수준, 종합계획 수립, 실태조사, 처우개선, 안전과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실질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.
-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본 개정안을 통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설치·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.

라. 기타 착안 사항 : 경미한 자구 수정 필요

- 법제처의 법령 입안·심사 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조나 호 사이에 새로 조나 호를 신설하는 경우에 그 뒤의 조나 호가 하나씩 순서가 밀리면서 이를 모두 개정해야할 경우, 신설하는 조나 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조 또는 호를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할

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제출된 개정안에서는 5조의 1로 가지번호를 붙였으나 이는 법제처의 규정 방법과 상이하므로 가지번호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.⁷⁾
- 또한 제5조의 2의 경우 항의 내용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출된 안에서 항 번호를 삭제하는 등 조문의 전체적인 형식을 고려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.

3 종합의견

-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물론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돌봄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에는 실질적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있음.
- 본 개정안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, 서울시에서도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.
- 다만, 제출된 개정안에서 기본적인 법령 개정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관련 업무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7)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[예시] 기존의 제○조 다음에 두 개 조를 추가하는 경우

제○조의2 및 제○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○조의2(○○) -----.
제○조의3(○○) -----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수정안 요지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,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수정안 주요 내용

- 조문번호의 수정 (안 제5조의1~제5조의3), 항 번호 삭제 등 자구 정비

VI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I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3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년 12월 19일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되, 조례의 체계 등을 고려해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문번호의 수정 (안 제5조의1~제5조의3), 항 번호 삭제 등 자구 정비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1부터 제5조의3까지를 각각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로 한다.

안 제5조의3(중전의 제5조의2)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안 제5조의4(중전의 제5조의3)제5항 중 “제5조의1, 제5조의2”를 “제5조의2,
제5조의3”으로, “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”를 “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
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 자문위원회 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 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자문을 위 하여 사회복지사등정 책자문위원회(이하 " <u>위원회</u>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<삭 제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, 시의원,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,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</p>	<p>제5조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<p>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한다.</p> <p>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.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09 409 379 450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71 275 1010 383">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p> <p data-bbox="608 409 1010 450">제5조의1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</p> <p data-bbox="644 544 1010 853">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644 880 1010 1256"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 data-bbox="644 1283 1010 1924"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p>	<p data-bbox="1038 409 1441 450"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</p> <p data-bbox="1075 544 1441 651">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09 275 379 315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08 275 1008 853"><u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①</u>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644 880 1008 1787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	<p data-bbox="1040 275 1441 853"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</u>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p> <ol data-bbox="1077 880 1441 98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p data-bbox="209 1816 379 1856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08 1816 1008 1989"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) ①</u>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</p>	<p data-bbox="1040 1816 1441 1989"><u>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 회의 등) ① ~ ④</u>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<p>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⑤ 제5조, <u>제5조의1, 제5조의2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</u>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p>	<p>⑤ ----, <u>제5조의2, 제5조의3 및 이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5조의4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 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 2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- ③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2.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
 - 나.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
 - 다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
 3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4.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중 위촉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
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
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
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
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
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
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
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
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
장이 소집한다.

1.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
④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)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2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.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.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. 안전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, 시의원,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,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④ <u>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⑤ <u>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조(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)</u></p> <p>①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<u>처우개선위원회(이하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</u> 2. <u>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<p>② <u>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③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④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 2. <u>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<u>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</u> 나. <u>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</u> 다.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</u> 3. <u>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</u> 4. <u>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u> <p>제5조의2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) ① 처우개선위원회 위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처우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③ 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u></p> <p><u>제5조의3(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·해촉) 시장은 위촉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<u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 <u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</u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><u>않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</u></p> <p>우</p> <p>제5조의4(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) ①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처우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 <u>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1.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시장이 요청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</u></p> <p>④ <u>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⑤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</u> <u>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</u>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</u> <u>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